

예산총칙

2023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087,341,593	32,620,248
일반회계	1,011,166,168	30,334,985
특별회계	76,175,425	2,285,263
공기업특별회계	67,868,745	2,036,062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5,408,473	762,254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42,460,272	1,273,808
기타특별회계	8,306,680	249,2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500	45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158,116	34,743
의료보호특별회계	3,357,134	100,714
주택사업특별회계	446,421	13,393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19,286	579
수질개선특별회계	624,223	18,727
산업단지조성및관리특별회계	2,700,000	81,000

제 2 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 세입·세출예산 " 과 같다.

제 3 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비비는 " 21,548,208 " 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의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 기준인건비 " 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